

수원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가단12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15. P

16. Q

17. R

변 론 종 결 2022. 10. 25.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부동산 중 별지2 목록 기재 피고들 각 지분에 관하여 2007. 12. 31.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판사 황지원

[별지1]

목 목 (1)



경기도 화성시 권 208㎡

이 상.

[별지2]

목 록 (2)



과 고		지 분
1.		1365 /17640
2.		1365 /17640
3.		819 /17640
4.		546 /17640
5.		1680 /17640
6.		1120 /17640
7.		1120 /17640
8.		1120 /17640
9.		585 /17640
10.		390 /17640
11.		390 /17640
12.		1530 /17640
13.		1020 /17640
14.		1020 /17640
15.		1530 /17640
16.		1020 /17640
17.		1020 /17640

이 상

[별지3]

청 구 원 인

1. 소외 S 이 1962년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매수한 경위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분할전 표시인 경기도 화성시 T , 전 91평은 원래 소외 망 U 의 소유였는데, 1962년 무렵, 위 토지 인근인 V 토지 소유자이자 그 지상에 흙벽돌집을 지어 거주하고 있었던 소외 망 S 이 위 망 U 으로부터 위 91평 중 도랑 동쪽 부분인 63평 부분(이하 "분할전 토지 부분"이라 합니다)을 매수하여 텃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W 이 1964. 12. 경 소외 S 으로부터 "분할전 토지 부분"을 매수한 경위

가. 한편 위 S 은 1964. 12. 경 서울에 거주하던 자녀들의 요청으로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던 V 대지 및 지상 흙벽돌집, 그리고 위 망 U 으로부터 매수하여 텃밭으로 사용하던 위 "분할전 토지 부분"을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W (1991. 5. 20. 사망)에게 매도하였으며, 이후 망 W 은 V 지상 흙벽돌집에 가족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분할전 토지 부분"을 텃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 그리고 당시 T , 전 91평 중 분할전 토지인 63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8평은 토지대상 상 1965. 6. 16. X , 전 28평으로 분할되었는데(이 분할은 당시 25세인 원고가 부친인 망 W 을 대신하여 원고가 주도했습니다. : 별첨 갑제5호증 분할도 참조). 위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 토지 부분"은 비로소 현재의

별지목록기재 부동산(면적 63평, 206㎡)으로 되었습니다.

다. 그 후 1987년 경 위 망 W 은 1987년 경 안말인 Y 에 집을 마련하여 이사를 가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V 지상 흙벽돌집을 헐어버렸습니다.

3. 원고의 부친인 망 W 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5. 6. 30. 특조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중복등기로 판명되어 직권말소된 경위

가. 망 W 은 위와 같이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을 피고, 소외 S 으로부터 매수하였기 때문에, 1965. 6. 30. 당시 시행중이던 일반농지에관한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 1670호)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 및 위 망 S 으로부터 매수한 집터인 V , 전 367평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별첨 갑제2호증의 1, 2 각 기재등기부등본, 갑제3호증 등기필증 각 참조)

나. 그런데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망 U 명의의 토지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망 W 은 위 망 U 명의의 등기부에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했으나, 당시 이를 처리한 법무사의 실수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망 U 명의의 토지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착오로 망 W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다. 이에 따라,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대하여는 2개의 토지등기부가 존재하게 되어, 중복등기처리규칙에 따라 뒤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위 망 W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등기부는 1998. 10. 8. 직권말소로 정리되었습니다.

4. 원고가 부친인 소위 망 W 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이후 20년이 경과한 2007. 12. 3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시효취득한 경위

가. 망 W 은 1987년 경 안말인 Y 에 집을 마련하여 이사하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V 지상 흙벽돌집을 헐어버리고 기존 지목대로 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 그 후 위 W 은 1987. 12. 경 자신을 부양하고 있던 장남인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제부터 원고의 몫이라고 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다. 이후부터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와 마찬가지로 이를 관리하면서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실제관리자 겸 경작자로서 재산세도 납부하여 왔습니다. (별첨 강제8호증 지방세 과세증명서 참조)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가 부친인 망 W 으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한 1987. 12. 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12. 31.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습니다.

5. 결 어

위와 같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를 합니다.

정 정 한 청 구 원 인

1. 소외 S 이 1962년 무렵 소외 땅 U 으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부분을 매수한 경위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의 분할전 표시인 경기도 화성시 T 전 91평은 원래 소외 땅 U 의 소유였는데, 1962년 무렵, 위 토지 인근인 V 토지 소유자이자 그 지상에 흙벽돌집을 지어 거주하고 있었던 소외 땅 S 이 위 땅 U 으로부터 위 91평 중 도랑 동쪽 부분인 63평 부분(이하 "분할 전 토지 부분"이라 합니다)을 매수하여 텃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 원고의 부친인 소외 땅 W 이 1964. 12. 경 소외 S 으로부터 "분할전 토지 부분"을 매수한 경위

가. 한편 위 S 은 1964. 12. 경 서울에 거주하던 자녀들의 요청으로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자신이 거주하던 V 대지 및 지상 흙벽돌집, 그리고 위 땅 U 으로부터 매수하여 텃밭으로 사용하던 위 "분할전 토지 부분"을 원고의 부친인 소외 땅 W (1991. 5. 20. 사망)에게 매도하였으며, 이후 땅 W 은 V 지상 흙벽돌집에 가족들과 같이 거주하면서 위 S 으로부터 매수한 "분할전 토지 부분"을 텃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 당시 T 전 91평 중 분할전 토지인 63평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28평은 토지대상 상 1965. 6. 16. X 전 28평으로 분할되었는데(이 분할은 당시 25세인 원고가 부친인 땅 W 을 대신하여 원고가 주도했습니다. : **갑제5호증 분할도 참조**), 위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 토지 부분"은 비로소 현재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면적 63평, 208㎡)으로 분할이 되었습니다.

다. 그 후 1987년 경 위 망 W 은 1987년 경 안말인 Y 에 집을 마련하며 이사를 가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V 지상 흙벽돌집을 헐어버렸습니다.

3. 원고의 부친인 망 W 이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1965. 6. 30. 특조법에 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중복등기로 판명되어 직권말소된 경위

가. 망 W 은 위와 같이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피고, 소외 S 으로부터 매수하였기 때문에, 1965. 6. 30. 당시 시행중이던 일반농지예관한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 1670호)에 의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토지 및 위 망 S 으로부터 매수한 집터인 V , 전 367평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제2호증의 1,2 각 제1등기부등본, 갑제3호증 등기원증 각 참조)

나. 그런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망 U 명의의 토지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망 W 은 위 망 U 명의의 등기부에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어야 했으나, 당시 이를 처리한 법무사의 실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위 망 U 명의의 토지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여, 착오로 망 W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다. 이에 따라, 위 부동산에 대하여는 결국 2개의 토지등기부가 존재하게 되어, 중복등기처리규칙에 따라 뒤에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위 망 W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토지등기부는 1988. 10. 8. 직권말소로 정리되었습니다.

4. 원고가 부친인 소외 망 W 으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증여 받은 이후 20년이 경과한 2007. 12. 31. 이를 시효취득한 경위

가. 망 W 은 1987년 경 안달인 Y 에 집을 마련하여 이사 하면서 기존에 거주하던 V 지상 흙벽돌집을 헐어버리고 기존 지목대로 밭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나. 그 후 위 W 은 1987. 12. 경 자신을 부양하고 있던 장남인 원고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은 이제부터 원고의 몫이라고 하면서,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였습니다.

다. 이후부터 원고는 위 부동산을 자신의 소유와 마찬가지로 이를 관리 하면서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원고가 위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 겸 경작자로서 재산세도 납부하여 왔습니다. (갑제8호증 지방서 과세증명서 참조)

라. 이에 따라 원고는, 원고가 부친인 망 W 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증여받아 점유를 개시한 1987. 12. 경.부터 20년이 경과한 2007. 12. 31. 이를 시효 취득하였습니다.

5. 망 U 의 상속인인 피고들의,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 목록(2) 기재 피고들 상속지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승계 등 □

가. 한편,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의 명의인인 소외 망 U 은 1982. 9. 22. 사망하여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위 부동산에 대하여 별지 목록(2) 기재 상속지분 비율로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공동승계하였습니다.

나. 그러므로, 피고들은 그 지분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갑제9호증의 1내지 50 각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참조)

6. 결 어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변경된 청구취지 기재의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청구를 합니다. 이 상.



끝.

